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재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79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10월 13일

발 의 자 : 김재진, 강석주, 경기문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지향, 김춘곤, 김현기, 남궁역, 민병주, 박성연, 박승진, 박영한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서준오, 서호연, 소영철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심미경, 유정인, 윤기섭, 이경숙, 이민석, 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 이은림, 이종태, 최민규, 최유희, 최재란, 허 훈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6명)

1. 제안이유

-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를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,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대기환경보전법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조기폐차 권고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.

1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5등급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
2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4등급 자동차

제19조제1항제2호 중 “5등급”을 “4등급과 5등급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8조의2제2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 또는 의무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 <u>다만,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제19조(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<u>5등급</u> 자동차 소유자가 조기폐차한 경우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16조(저공해 조치 명령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<단서 삭제></u>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2(<u>조기폐차 권고</u>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<u>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<u>5등급</u> 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자동차</p> <p>2. 특별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<u>4등급</u> 자동차</p> <p>제19조(재정적 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4등급</u> 과 <u>5등급</u> ----- 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2091600000004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김재진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김지혜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9.16.

회신일 : 2022.09.19.

내용문의 : 02-2180-7955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I. 비용추계 요약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2호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용

나. 전제

- 4등급 조기폐차 지원은 연간 일괄 4,000천원/대로 차량 1만 대 지원으로 가정
- 비용은 2023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(2023~2027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담당자 유선 문의 조사 자료 통해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200,000,000천원 (연평균 40,000,000천원)
 - 총 비용 = 4등급 경유차 소유자 조기폐차 지원 비용
 - = 4,000천원/대 x 10000대 x 5년

※ 지원 금액 및 차량 대수 :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담당자 유선 문의 조사 자료 준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3)	2차년도 (2024)	3차년도 (2025)	4차년도 (2026)	5차년도 (2027)	합계
	세입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4등급 경유차 소유자 조기폐차 지원 비용 (제18조의 2 및 제19조제1항제2호)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200,000,000
	소계 (b)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200,000,000
	□ 총 비용 (b-a)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40,000,000	200,000,000

주1: 4등급 경유차 소유자 조기폐차 지원 비용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해당 사업 담당자 유선 문의 조사 자료 준용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김지혜

☎ 02-2180-7955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